

[별표 9] <개정 2006.2.24>

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70조제3항관련)

| 위 반 행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법조문             |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4조제1항 제1호     | 등록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<br>가.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<br>나.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4조제1항 제2호     | 영업정지 3월<br><br>등록말소                   |
| 3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<br>가.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<br>나.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<br>다.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| 법 제54조제1항 제3호     | 영업정지 1년<br><br>영업정지 3월<br><br>영업정지 1월 |
| 4.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<br>가.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때<br>나.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4조제1항 제4호     | 영업정지 6월<br><br>영업정지 3월                |
| 5.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실적이 없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4법 제54조제1항제5호 | 등록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4조제1항 제6호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영업정지 3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영업정지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영업정지 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| 법 제54조제1항 제7호 | 등록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이한 명령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4조제1항 제8호 | 기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. 다만,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. |
| 가.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영위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영업정지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법 제53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영업정지 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